

서울특별시 중랑구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

서울특별시 중랑구 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6년 3월 12일

서울특별시중랑구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임용분야	임용등급	임용인원	근무기간	근무예정부서	담당직무 내용
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총괄	방시간선택제임기제급	1명	1년	기업지원과(사회적경제지원센터)	·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총괄 -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사설·인력·예산 관리 등 - 입주기업 모집·선정·계약 관리 및 입주실 운영 ·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아제 발굴 - 민·관, 민·민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- 대외유관 기관 협력 확대 ·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사업 활성화 -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·육성 · 그 밖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 관련 업무

※ 근무기간은 임용일로부터의 기간임

※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(서류전형 결과 포함)에 1회 이상 재공고하며, 이 경우, 재공고분야의 기존 응시자는 재응시 불필요(단,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)

2. 법령 근거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
-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
- 「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

3. 응시 자격요건

○ 공통요건 (기준일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들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

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)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

※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

○ **임용분야 응시자격 요건:** 다음의 자격 및 경력요건을 갖춘 사람

※ 응시희망자는 **자격 및 경력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**

구 분	응시 자격요건 (기준일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총괄 지방시간선택제 임 기 제 다 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역·성별: 제한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) 연령: 만 18세 이상 자격요건: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<p>[경력인정범위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민간기관 등에서 사회적경제 관련분야 근무경력 *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관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,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* 실무경력은 최종경력 기준,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

4. 근무조건 및 채용기간

임용분야	근무조건	임용기간	비 고
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총괄	주 35시간 (1일 7시간)	임용일로부터 1년	

※ 공무 수행 상 필요 시 조기출근, 휴일근무, 연장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

※ 근무기간은 사업의 필요성 및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,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

5. 보수 수준

○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등에 따라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, 최종연봉은 임용 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

○ 시간선택제(한시)임기제의 경우,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

<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(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) >

구 분	상 한 액	하 한 액
7급(상당) (주 35시간 기준)	70,782천원 (61,934천원)	50,272천원 (43,988천원)

※ 연봉 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별도 지급

※ 「공무원연금법」 적용 대상이며,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3조의2에 따라 본인이 희망할 경우,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

6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○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: **2026. 3. 23.(월) ~ 3. 25.(수) *09:00~18:00, 점심시간 제외**

- 접수방법: 방문 또는 우편(등기) 접수

- 접 수 처: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행정지원과

▶ (우편번호 02043)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, 중랑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(4층)

▶ **접수마감일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**하며, 퀵서비스 및 택배를 통한 접수 불가

▶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(8급·라급 5,000원)

(우편접수자는 응시원서 내 연락처로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별도 안내)

- 응시원서 양식은 중랑구청 홈페이지(<http://www.jungnang.go.kr>) 채용공고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(*서식변경금지)

- 우편접수,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
○ 시험일정
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공고	면접시험(기간 중 1일)	면접시험 합격자 발표
2026. 4. 2.(목)	2026. 4. 8.(수) ~ 4. 14.(화)	2026. 4. 16.(목)

※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

(단,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)

○ 시험방법

가. 1차 시험(서류전형)

-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응시요건 및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- ※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, 경력 및 업무실적, 직무 관련 자격증,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중량구에서 별도 설정·시행
- ※ 우대요건은 서류전형에서만 적용하며,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

나. 2차 시험(면접시험)

-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
- 자질 및 발전가능성, 전문성,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
-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합격자 결정

다.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: 구 홈페이지 공고

-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, 서울특별시중량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
-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라. 임용예정일: 2026. 5. 1.자 예정 (*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합격자 개별 통지)

7. 제출서류

○ 공통사항(필수)

① 응시원서 1부 (별지1호 서식)

- 응시 수수료: 서울특별시 중량구 수입증지(7급·다급 7,000원)
- ※ 인증장소: 중량구청 재무과(4층)
- ※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,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, 2인 이상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, 관련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

② 이력서 1부 (별지2호 서식)

-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(재직)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,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제출

③ 자기소개서 1부 (별지3호 서식)

- 작성 시 직·간접적으로 학교명,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

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(별지4호 서식)

⑤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1부, 학위증서(석사 이상) 또는 학위증명서 1부

-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
⑥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

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, 주 단위 근무시간(시간제 근무 경력일 경우 반드시 명시), 담당업무(응시 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인정범위 해당업무)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
- ※ 경력(재직)증명서 상에 근무시간, 담당업무 등 위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, 반드시 '경력 사실 확인 증명서(별지8호 서식)' 추가 제출
- 응시자격에서 당해 분야의 '경력' 이라 함은 '근무 또는 연구경력' 을 말하는 것으로, '연구경력' 은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서의 연구원 경력 등을 말하는 것이고, 석사학위 취득 기간 등 대학이나 대학원 등에서의 수학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함

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

- 경력(재직)증명서 내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'보험기간 전체기간' 으로 발급
-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

⑧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(별지5호 서식)

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(별지6호 서식)

⑩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(별지7호 서식) 또는 주민등록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) 1부

- ※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반드시 첨부
- ※ 제출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하며,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이 불필요한 서류의 경우 발급일과 상관없이 제출 가능함

○ 개별사항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
- 경력 사실 확인 증명서
- 응시 자격 및 우대요건 관련 증빙자료(자격증, 면허증,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등)
-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등

8. 기타(유의)사항

- 응시 희망자는 응시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기 바라며, 다른 임기제 채용 분야와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.

-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입증자료는 사본 제출을 허용하고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 (단, 원본서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아닌 경우 반환요청 가능)
- 응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 수수료가 반환됩니다.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기재 착오 또는 누락, 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)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해당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-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「공무원연금법」 제3조 및 제50조에 따라 현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,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됩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직무내용 관련 문의: 중랑구청 문화관광과 기업유치팀(02-2094-1301)
 - 채용절차 관련 문의: 중랑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(02-2094-0344)